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 - 170
----------	---------

제출년월일 : 2003. 10. 1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장단콩축제장소가 사유농지이며 소유주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매년 행사장 이용여부가 불투명하여 연중 체계적인 축제준비 및 프로그램배치에 어려움이 많고 행사장이 협소하여 동 축제의 성장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장단콩 축제부지를 확보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콩깎러리등을 설치하여 장단콩을 비롯한 우리시 특산물을 상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홍보관으로 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 지
 - 위 치 군내면 백연리 1463번지의외 16필지 (별첨 취득 대상재산목록 참조)
 - 면 적 36,390㎡(11,012평)
 - 재산가액 1,000백만원(취득예정가격)

○ 취득방법 신규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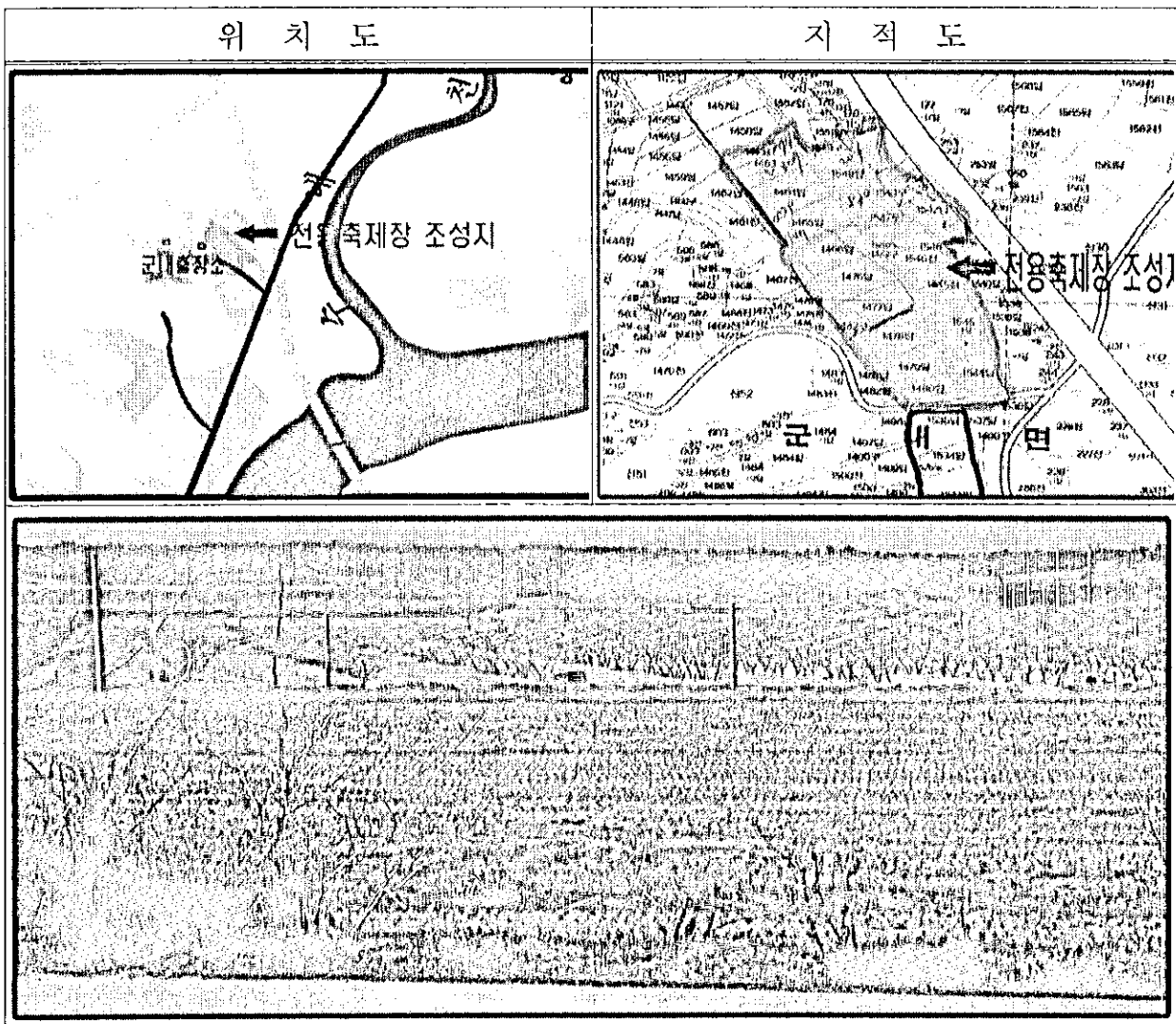
○ 관련법규 : 별첨

·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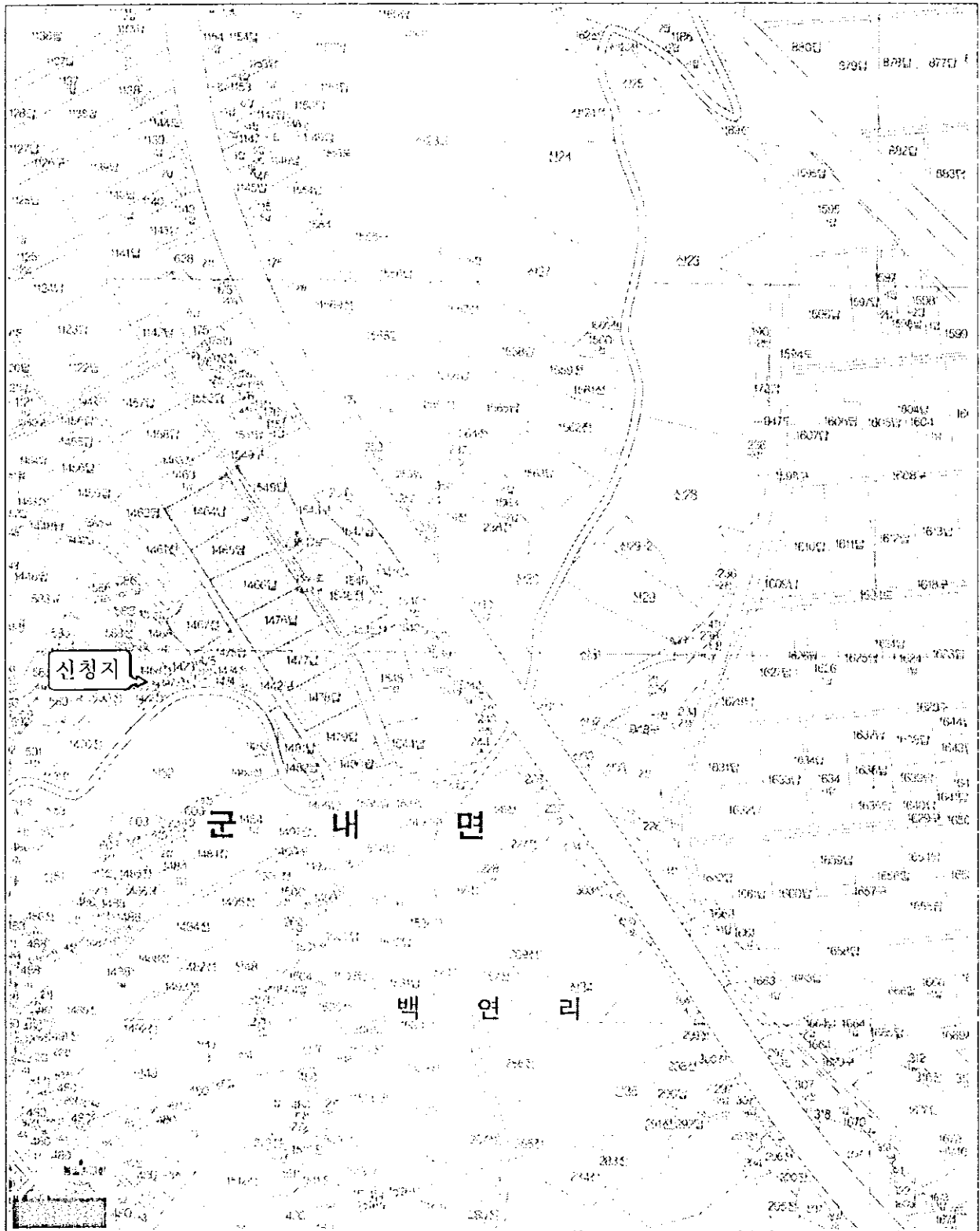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5조

□ 토지위치도 : 별첨

□ 장단콩축제장 취득부지 위치도 전경



장단콩축제장 취득부지 지도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3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총 계	토지	27	31,356	2,165,272	17	36,390	1,000,000	44	67,746	3,165,271.5	
	건물	17	11,355	13,763,416	0	0	0	17	11,354.71	13,763,416.0	
	기타	1	52,200	261,000	0	0	0	1	52,200	261,000.0	
계	토지	23	29,461	1,881,022	17	36,390	1,000,000	40	65,851	2,881,021.5	
	건물	16	10,698	13,763,416	0	0	0	16	10,697.71	13,763,416.0	
	기타	0	0	0	0	0	0	0	0	0.0	
1 매입	토지	3	7,449	1,045,491.0	17	36,390	1,000,000.0	20	43,839	2,045,491.0	
	건물	3	10,106	13,690,000.0				3	10,106	13,690,000.0	
	기타	0	0	0.0				0	0	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0	0	0.0				0	0	0.0	
	건물	0	0	0.0				0	0	0.0	
	기타	0	0	0.0				0	0	0.0	
3 기타취득	토지	20	22,012	835,530.5				20	22,012	835,530.5	
	건물	13	592	73,416.0				13	591.71	73,416.0	
	기타	0	0	0.0				0	0	0.0	
계	토지	4	1,895	284,250	0	0	0	4	1,895	284,250.0	
	건물	1	657	0	0	0	0	1	657	0.0	
	기타	1	52,200	261,000	0	0	0	1	52,200	261,000.0	
4 매각	토지	4	1,895	284,250.0				4	1,895	284,250.0	
	건물	1	657	0.0				1	657	0.0	
	기타	1	52,200	261,000.0				1	52,200	261,000.0	
5 양여	토지	0	0	0.0				0	0	0.0	
	건물							0	0	0.0	
	기타	0	0	0.0				0	0	0.0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0	0	0.0				0	0	0.0	
	건물	0	0	0.0				0	0	0.0	
	기타	0	0	0.0				0	0	0.0	

2003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계	토지(답)		36,390				
1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64	2,741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영훈	
2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65	2,470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민재검	
3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66	2,823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영호	
4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76	2,669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영호	
5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77	2,607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영호	
6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78	2,481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종섭	
7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79	2,072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김효신	
8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80	985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김효신	
9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6	3,941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남상갑외1인	
10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5	542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국	
11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5-1	3,354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국	
12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4	1,408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이종섭	
13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8	2,746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최승영외3인	
14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542	1,923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국	
15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81	1,037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김복순	
16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82	561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김복순	
17	토지(답)	군내면 백연리1467	2,030	2003년	장단콩축제장부지	김추욱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변경안은 2003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장단콩축제 장소가 사유농지이며 소유주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매년 행사장 이용여부가 불투명하여 연중 체계적인 축제준비 및 프로그램 배치에 어려움이 많고 행사장이 협소하여 동축제의 성장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장단콩축제 부지를 확보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콩 갤러리등을 설치하여 장단콩을 비롯한 우리시 특산물을 상시 홍보·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홍보관으로 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토 지

- 위 치 군내면 백연리 1463번지의외 16필지(별첨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 면 적 36,390m²(11,012평)
- 재산가액 1,000백만원(취득예정가격)

○ 취득방법 : 신규취득

○ 관련법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3. 검토의견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파주 장단콩 축제장 조성을 위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643번지의외 16필지 36,390평방미터(11,012평)의 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안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심의결과 축제장 조성을 위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포함한 관련법령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임.

- 이후 축제장 부지 취득에 대한 관련법령의 검토와 관련 부서 간의 협의과정에서 동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기존 축제장 대상부지에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토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근 군사동역가 가능한 준농림지역내 토지 3필지 3,628㎡를 추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음.
-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검토와 도시과와 농축산과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장단콩 축제장 예정부지를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해제 문제는 축제장 대상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시책, 공익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례를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301,000㎡)과 탄현 하수종말처리장(97,278㎡), 금촌 하수종말처리장(25,129㎡) 등의 경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던 점과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신청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가 거부되었던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장단콩 전용축제장이 조성되면 현 축제장소가 사유농지로 농작물 재배로 인해 매년 행사장 이용이 불투명하고 행사장 자체가 협소하여 체계적인 축제 준비 및 프로그램 배치 등 축제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축제의 내실화를

통해 행사자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파주시가 통일촌 지역 통일로변에 대규모 축제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콩 축제의 효율적인 진행은 물론 다른 문화행사장의 이용도 가능하고 남북문제와 관련되는 이벤트 행사의 추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남북교류의 확대와 여건변화에 따라 다른 용도 및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인근지역 지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예산이 다소 높게 책정되기는 하였으나 인근 과수원이 대상토지에 포함됨으로써 과수목 보상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으로 이에 대한 조정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이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축제장 부지를 도시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임진각주변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토지매입과정에서 주민들의 무리한 지가보상요구가 우려되어 개별협의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됨.

- 끝으로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이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사유로 금번 임시회에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정행태로 이에 시정요구와 함께 관계공무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추궁과 엄중한 주의촉구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地方財政法施行令》[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地方自治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